

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8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10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청소년기본법」 및 「청소년 활동 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 설치기준과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,
- 일동청소년문화의집이 신축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가.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(안 제1조).
- 나.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신축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자 함(안 제2조).
- 다. 「청소년 활동 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자 함(안 제3조).
- 라.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(안 제5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
- 「청소년 활동 진흥법」 제11조·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5. 9. 9 ~ 2005. 9 . 29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”를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 활동 진흥법」 제11조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명칭과 위치) 문화의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명 칭	위 치	비 고
안산 청소년문화의집	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-10 (차량등록사업소 3층)	
일동 청소년문화의집	안산시 상록구 일동 596-6	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 (시설)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활동시설
2. 휴게시설
3. 위생시설
4. 물품보관시설
5. 기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5조 제1항 중 “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의집 관리·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”를 “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”로 한다.

제5조 제3항 중 “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”를 “청소년지도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체육청소년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체육청소년과장 민 화 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청소년담당 문 양 교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희 자 (행정 2108)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문화의집 (이하 "문화의집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 활동 진흥법」 제11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								
<p>제2조(위치) 문화의집은 안산시 선부동 1070-10번지(차량등록사업소내)에 둔다.</p>	<p>제2조 (명칭 및 위치) 문화의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</p>									
<p>제3조(시설)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보자료실 2. 감상 및 관람실 3. 다목적 홀 4. 창작 공방 및 연습실 5. 회의 및 동아리방 6. 기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안산 청소년문화의집</td> <td>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-10 (차량등록사업소 3층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동 청소년문화의집</td> <td>안산시 상록구 일동 596-6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3조 (시설)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활동시설 2. 휴게시설 3. 위생시설 4. 물품보관시설 5. 기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	명칭	위치	비고	안산 청소년문화의집	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-10 (차량등록사업소 3층)		일동 청소년문화의집	안산시 상록구 일동 596-6	
명칭	위치	비고								
안산 청소년문화의집	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-10 (차량등록사업소 3층)									
일동 청소년문화의집	안산시 상록구 일동 596-6									
<p>제5조(관리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문화의집에는 1인이상의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자를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.</p>	<p>제5조 (관리운영의 위탁) ①---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청소년지도사 ----- ----- -----</p>									

□ 관계법령 발췌서

○ 青少年基本法

제3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8. "청소년단체"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18조 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

○ 청소년기본법시행령

제25조 (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) ①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[별표 5]

청소년지도사·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(제25조제2항관련)

1.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

가. 청소년수련시설

배치대상	배치기준
청소년 문화의집	○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.

○ 청소년활동진흥법

제11조 (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3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16조 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"위탁운영단체"라 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○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

제8조 (수련시설의 시설기준)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

나. 청소년문화의집

구 분	기 준
(1) 활동시설	○ 제1호 나목중 (1) 내지 (3) 및 (8)에 해당하는 시설중 2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.
(2) 휴게시설	○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이에 필요한 기구·설비(의자·탁자 등)를 갖추어야 한다.
(3) 위생시설	○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·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(4) 기타시설	○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